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양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영도소조 회의 현황
2. 영도소조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제도개혁 현황
3. 2015년 경제개혁 중점

주요 내용 ●●●

-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CLGOR, Central leading group for overall reform)’ (이하 <영도소조>)가 2013년 12월 31일 정식 출범함.

 - <영도소조>는 조장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 부조장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리우윈산(刘云山)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张高丽) 국무원 부총리로 구성됨.
 - <영도소조>는 중국의 경제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 사회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총괄하고, 각종 개혁을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추진하는 기관임.

- <영도소조>는 정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 회의의 주된 내용은 경제·문화·사회·정치 등 중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제도의 개혁임.

 - 회의에서는 ‘개혁’에 초점을 맞춰 민생문제에서부터 정치문제까지 의제로 다루고 있음.
 - 심의 및 심의통과된 주요 의제로는 호적제도, 토지제도, 국유기업, 의법치국, 재정·세제, 사법제도, 싱크탱크 설립, 축구제도 등이 있음.

- 2015년 중국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면적인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음.

 - 대규모 경기부양정책보다는 중속 성장기조 유지와 경제구조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시행될 것이며, 특히 2015년 경제업무보고에 발표된 8대 경제개혁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1. 영도소조 회의 현황

-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 전회’)'에서 언급된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CLGOR, Central leading group for overall reform, 이하 <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国家安全委员会 CNSC, China National Security Council)’ 설립됨.
- 2013년 12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개최해 <영도소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업무보고 후 영도소조가 정식으로 출범함.

가. 영도소조 출범 배경 및 역할

- <영도소조>는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총괄하고,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진 및 책임지는 기관임.
- <영도소조>는 경제제도, 정치제도, 문화제도, 사회제도, 생태제도 및 공산당 건설과 관련된 개혁에 대한 중요원칙과 정책에 대한 총체적 방안을 연구함.
- 또한 중앙의 중대개혁정책을 총괄적으로 시행 및 지도, 추진하는 최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함.
 - <영도소조>는 중국 정치시스템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여 맡은 분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¹⁾임.
- <영도소조>의 조장은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며, 부조장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리우원산(刘云山)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张高丽) 국무원 부총리임.
- 조장, 부조장 모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인 점을 감안하면 <영도소조>가 중국의 개혁의지를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음.

나. 영도소조 회의 과정 및 주요 의제

- 2013년 말 정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2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 내용은 주로 경제·문화·사회·정치 등 중국 전반에 걸친 각종 제도개혁에 중점을 둬.²⁾

1) 태스크포스(Task Force)는 특별한 목표달성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임시조직.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표 1. <영도소조>의 회의 주요 내용

일시		회차	회의 주요 내용
2013년	12월 31일	-	<영도소조> 정식 출범
2014년	1월 22일	1	<영도소조> 2014년 업무 규칙 및 계획
	2월 28일	2	사법제도 개혁
	6월 6일	3	호적제도, 재정·세제, 사법제도 개혁
	8월 18일	4	기업 개혁
	9월 29일	5	토지제도 개혁
	10월 27일	6	싱크탱크 개혁
	12월 2일	7	토지제도 개혁
	12월 30일	8	의법치국
2015년	1월 30일	9	의법치국
	2월 27일	10	촉구개혁
	4월 1일	11	사법제도 개혁
	5월 5일	12	혁신개혁 시범구

자료: 저자 정리.

- <영도소조>에서는 <3중 전회>에서 발표했던 7대 개혁인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국방·공산당 제도건설을 경제·문화·사회·정치 개혁으로 재분류하여 회의 의제로 상정함.

표 2. <영도소조> 의제

회차	회차별 주요 의제
1	「<영도소조> 업무 규칙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工作规则)」
	「<영도소조> 관공실 업무 세칙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办公室工作细则)」
	「<영도소조> 하부 6개 기관 소조명단 (中央深改小组下设6个专项小组名单)」
	「3중 전회 <결정> 시행에 관한 유관기관 업무분담 방안 (中央有关部门贯彻落实党的十八届三中全会<决定>重要举措分工方案)」
2	「<영도소조> 2014년 주요 업무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2014年工作要点)」
	「3중 전회 <결정>에서 언급된 입법업무에 관한 연구 의견 (关于十八届三中全会<决定>提出的立法工作方面要求和任务的研究意见)」
	「경제체제와 생태문명체제 개혁에 관한 보고 (关于经济体制和生态文明体制改革专项小组重大改革的汇报)」
	「문화체제 개혁심화 시행방안 (深化文化体制改革实施方案)」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의 의견 및 업무시행 분담에 관한 방안 (关于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意见及贯彻实施分工方案)」

2) 영도소조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관련 법안은 국무원을 통해 발표함.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표 2. 계속

회차	회차 주요 의제
3	「재정·세제 체제 개혁심화의 총체적 방안 (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案)」
	「호적제도 개혁추진에 관한 의견 (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사법체제 개혁 시범실시에 관한 문제와 의견 (关于司法体制改革试点若干问题的框架意见)」
	「상하이시 사법개혁 시범실시 업무방안 (上海市司法改革试点工作方案)」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 (关于设立知识产权法院的方案)」
4	「중앙 관리기업 간부 급여제도 개혁방안 (中央管理企业主要负责人薪酬制度改革方案)」
	「중앙기업 간부의 합리적 직급대우 및 업무지출 규범에 관한 의견 (关于合理确定并严格规范中央企业负责人履职待遇、业务支出的意见)」
	「학생모집제도 개혁심화에 관한 시행 의견 (关于深化考试招生制度改革的实施意见)」
	「전통미디어와 신홍미디어 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推动传统媒体和新兴媒体融合发展的指导意见)」
	「(2014-2020년) '3중 전회' 주요 개혁 시행 계획 (党的十八届三中全会重要改革举措实施规划 (2014-2020年))」
	「상반기 전면 심화개혁 업무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 (关于上半年全面深化改革工作进展情况的报告)」
5	「농촌 토지 경영권 유통의 질서 있는 발전과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 발전 지도를 위한 의견 (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
	「농민 지분합작 추진 및 집체자산 지분의 권한부여 개혁 시범 지역에 관한 방안 (积极发展农民股份合作赋予集体资产股份权能改革试点方案)」
	「중앙 재정과학기술 계획(프로젝트, 기금 등) 관리 개혁에 관한 방안 (关于深化中央财政科技计划(专项,基金等)管理改革的方案)」
6	「사회주의의 민주적 건설 협의 강화에 관한 의견 (关于加强社会主义协商民主建设的意见)」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업무 진행 및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工作进展和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推广意见)」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 강화에 관한 의견 (关于加强中国特色新型智库建设的意见)」
	「국가 과학연구 기초시설 및 대형 과학연구기구의 사회개방에 관한 의견 (关于国家重大科研基础设施和大型科研仪器向社会开放的意见)」
7	「농촌 토지징수,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주택지제도 개혁 시범시행 업무에 관한 의견 (关于农村土地征收,集体经营型建设用地入市,宅基地制度改革试点工作的意见)」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체제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 (关于加快构建现代公共文化服务体系的意见)」
	「현급 이하 기관의 공무원 직무 및 병행제도 확립에 관한 의견 (关于县下机关建立公务员与职级并行制度的意见)」
	「중앙기술검사위원회 파견 기구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 (关于加强中央及委派之机构建设的意见)」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정 시범 실시방안 (最高人民法院设立巡回法庭试点方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행정구분에 관한 시범 실시방안 (设立跨行政区划人民法院,人民检察院试点方案)」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표 2. 계속

회차	회차 주요 의제
8	「2014년 전면 심화개혁 업무 총괄 보고 (关于2014年全面深化改革工作的总结报告)」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 2015년 주요 업무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2015年工作要点)」
	「4중 전회 <결정> 시행을 위한 2015년 업무 (贯彻是适当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重要举措2015年工作要点)」
9	「4중 전회 <결정> 시행을 위한 사법체제 및 사회제도 개혁의 시행방안 (关于贯彻落实党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进一步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实施方案)」
	「성(자치구, 직할시)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부서기 추천 방법(시범 실시) (省(自治区、直辖市) 纪委书记、副书记提名开叉办法(试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파견 기율검사 조장, 부조장 추천 방법(시범 실시) (中央纪委派驻纪检组组长、副组长提名考察办法(试行))」
10	「국유기업 기율서기와 부서기 추천 방법(시범 실시) (中管企业纪委书记、副书记提名考察办法(试行))」
	「중국 축구개혁의 총체적 방안 (中国足球改革总体方案)」
	「간부들의 사법활동과 구체적 안건 처리기록, 통보 및 책임추구에 관한 규정 (关于领导干部干预司法活动、插手具体案件处理的记录、通报和责任追究规定)」
	「인민감독원제도 개혁 심화방안 (深化人民监督员制度改革方案)」
11	「상하이시 간부의 배우자, 자녀 등이 경영하는 기업관리 업무규범에 관한 의견 (上海市开展进一步规范领导干部配偶、子女及其配偶经商办企业管理工作的意见)」
	「농촌교사지원계획(2015-2020년) (乡村教师支持计划(2015-2020年))」
	「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 실시에 관한 지도 의견 (关于城市公立医院综合改革试点的指导意见)」
	「국민배심원제도 개혁 시범 실시방안 (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方案)」
	「인민법원 입안등록제도 개혁 입안추진에 관한 의견 (关于人民法院推行立案登记制改革的意见)」
12	「제18차 4중전회의 중요 시행계획(2015-2020년) (党的十八届四中全会重要举措实施规划(2015-2020年))」
	「혁신개혁 시범구 전면적 추진에 관한 총체적 방안 (关于在部分区域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的总体方案)」
	「검찰기관 공익소송 제기 개혁 시범 실시방안 (检察机关提起公益诉讼改革试点方案)」
	「법률지원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 (关于完善法律援助制度的意见)」
	「과학기술체제 심화개혁 시행방안 (深化科技体制改革实施方案)」
	「중국 과학기술의 정부 업무 적용에 관한 시범 시행방안 (中国科协所属学会有序承接政府转移职能扩大试点工作实施方案)」

자료: 「10次会议45份文件勾勒改革全景地方、企业深改进行时」, 『21世纪经济报道』, (2015年3月9日);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十二次会议召开」, 『新华社』 재정리. (2015年5月5日)

- <영도소조> 회의는 현재까지 총 12차례 60개의 주요 의제로 진행되었고, 그중 심의통과된 논의사항은 총 40개, 심의만 이루어진 사항은 20개임.
- '개혁'에 초점을 맞춰 포괄적으로 여러 의제까지 다루고 있으며, 부문별 개혁을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 및 학자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2. 영도소조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제도개혁 현황

가. 호적제도 개혁³⁾

■ <영도소조> '3차 회의'에서 호적제도에 관한 법안을 심의, 그동안 출생지를 기준으로 발급하던 호구⁴⁾를 폐지하고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주증⁵⁾을 발급받는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3차 회의에서 「호적제도 개혁추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이하 <호적의견>), 덩샤오핑(邓小平) 이론⁶⁾, '3개 대표(三个代表)'⁷⁾ 사상, 과학적발전관⁸⁾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으로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주시켜 농민의 시민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중국의 현행 호적제도는 농민과 도시민 간 호구 차이로 소비시장의 발전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함.

-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과 도시민 간 호구 차이로 취업, 임금, 의료, 복지, 교육, 주택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이 지속, 이는 사회 불균형 현상과 소비시장 발전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호적제도 개혁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함.
- 중국에서 호구는 한 지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수입 차이를 결정함.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호적제도 개혁추진에 관한 의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7 참고.

4) 호적상 집의 수효(数)와 식구 수.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호주(户主)를 기준으로 한 집(家)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며, 호적(户籍)의 하위개념임.

5) 일정기간 동안 누적점수를 계산해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국민에게만 호구를 주는 제도

6) '제11기 3중 전회' 이후 '사상해방(思想解放)'과 '실사구시(实事求是)'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해오며 탄생한 이론으로 '종합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산', '인민생활 향상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덩샤오핑(邓小平)체제의 핵심 국정 운영관

7)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자본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장쩌민(江泽民)체제의 핵심 국정운영관.

8) 전면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후진타오(胡锦涛)체제의 핵심 국정운영관.

■ 기존의 일원화된 호구로 파생된 ‘남색인장호구(藍色印章戶口)⁹⁾’ 등을 폐지하고, 일원화된 거주증 제도를 제정하여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들을 해결할 예정이다.

- 거주증을 획득한 농민은 직업·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도시민과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편 도시민과 동일하게 국가와 지역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
- 동시에 ‘실제거주 인구등록제도(實際居住人口登記制度)’를 만들어 정확한 인구수와 규모 및 지역분포 등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구정보 관리제도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임.
- 인구 기초정보에 근거한 ‘국가인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수입·사회보장·주택·신용·위생·세무 등으로 분류하는 등 정보를 세분하여 통합관리할 예정임.

■ 호적제도 개혁으로 향후 중국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일원화된 거주증 제도를 바탕으로 호적제도가 전산화되면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전반적인 교육수준과 의료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일원화된 제도의 시행으로 인구관리 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도시민과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 간 차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거주증을 획득한 농민은 현지 도시민과 동등한 교육·의료·위생·복지·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호적제도의 개혁은 복지 등 서비스 산업과 건설경기의 활성화,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 해소,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은 35.3% 수준으로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GDP 수준이 비슷한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도시화율인 60%를 하회하고 있음.
- 현재 도시로 이주한 농민은 약 2억 6천만 명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부동산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국정부와 건설업계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교통, 상하수도, 도로, 하천, 항만, 공항, 학교, 병원, 공원 등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도시에 진입한 농민들의 소득확대를 통해 삶의 질이 제고됨에 따라 관광, 레저, 숙박, 통신 등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함은 물론 전 산업에 걸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나. 토지제도 개혁¹⁰⁾

9) 해당 도시 주택 구매 등의 형식을 통해 호구를 취득하는 제도로 부동산시장의 호황을 이끌어온 제도.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중국 토지제도의 개혁과정과 향후 방향」,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12 참고

■ <영도소조> ‘5차 회의’와 ‘7차 회의’에서 토지제도에 관한 법안을 심의, 토지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민의 재산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 ‘5차 회의’에서 ‘농촌 토지 경영권 유통의 질서 있는 발전과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 발전 지도를 위한 의견(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이하 <토지의견>), ‘7차 회의’에서 ‘농촌 토지징수,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주택지제도 개혁 시범시행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农村土地征收、集体经营型建设用地入市、宅基地制度改革试点工作的意见)’이 심의됨.
-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토지의 유상사용 제도, 재산권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농업의 현대화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추진함.

■ 중국 토지제도 개혁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와 집체에 귀속, 국가와 집체는 국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권·경영권 관리권 등을 행사하며,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소유, 농촌지역의 토지는 집체소유로 개인이나 기업은 도급권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동안 개인이나 기업에 토지 도급권만 허용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왔으며, 특히 도급권만 소유한 농민과 지방정부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해왔음.
- 현재 중국 농촌의 토지제도는 도시와 농촌 간 경제 격차, 농민공 문제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왔음.
- 1949년 마오쩌둥(毛泽东) 정권에서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였지만, 몇 년 후 토지를 다시 강제로 국유화하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도급제를 실시함.
- 지방정부는 농민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비싼 값에 매도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김.
- 또한 도시민들은 주택을 사고팔 수 있지만, 농민들은 토지를 거래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납세의 의무는 크지만 권한은 적은 계층으로 전락함.
- 현행 토지제도의 모순으로 가난에 몰린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 하층민인 농민공을 형성하게 되었음.
- 중국의 농지는 집체소유로 농민 개인이 매매나 투자를 할 수 없어 대규모 경영을 전제로 하는 농업 현대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인 농민과 농민공의 소득을 증가시켜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농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됨.

■ <토지의견>을 통해 농지의 집체소유를 전제조건으로 도급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촉진시켜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권 분립’ 및 일원화된 ‘토지경영권 등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체토지소유권이 각 농민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토지경영권에 관한 ‘등기권리증’ 제도를 시행하여, 토지거래에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그동안 농민은 소유권이 아닌 토지에 대한 도급경영권만 소유할 수 있어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해왔으며,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업종사자의 토지 도급경영권 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음.
- ‘등기권리증’ 제도는 2017년까지 완비하고, 토지 도급권의 양도를 제도화한 ‘토지신탁제도’를 시행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임.
- ‘토지신탁제도’가 시행되면 농민의 토지양도 신탁상품을 통해 자신의 도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되어, 농민의 토지임대 사용료와 부가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권 분립’을 통한 토지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됨.

- 개혁개방 이후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삼농(三农)문제(농촌, 농업, 농민)’를 해결, 내수와 소비를 촉진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농촌의 토지와 주택 사용권에 대한 매매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농민들은 양도와 은행대출을 통해 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분야에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도급지의 토지용도는 변하지 않지만 자본가와 합작을 통해 대규모 기계화 농업이 가능해져 농업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휴 토지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토지신탁제도’의 도입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농민공은 도급권을 보유하면서 경영권만 양도함으로써 전문농업인이 생산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력 증대와 생산혁신에 기여할 것임.
- ‘토지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유휴 토지나 황무지,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민공의 시민화 촉진, 늘어난 건설용지를 통한 도시 발전자금 확보, 도시주민 증가로 인한 서비스업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됨.

다. 기업개혁¹¹⁾

- <영도소조> ‘4차 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의견을 심의, 국유기업 주요 간부들의 대우와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4차 회의’에서 「중앙 관리기업 간부 급여제도 개혁방안 『中央管理企业主要负责人薪酬制度改革方案』 및 「중앙기업 간부의 합리적 직급대우 및 업무지출 규범에 관한 의견(关于合理确定并严格规范中央企业负责人履职待遇业务支出的意见)」을 심의함.
- 국유기업의 주요 간부들을 시장경제에 따라 합리적인 비율로 채용하고, 적정한 직급 및 급여를 제공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9 참고.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업무추진비 규모를 엄격히 규정하도록 제시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임.

■ 또한 ‘4차 회의’에서 2014년 7월에 발표한 국유기업 4항(项) 개혁안의 구체적 시행내용을 포함한 중앙 국유기업 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통과시킴.

- 「전체 중앙 국유기업 구조조정 방안(中央企业布局结构调整总体方案)», 「국유기업의 사회적 직능 분리 및 잔존문제 해결방안(加快剥离国有企业社会职能和解决历史遗留问题工作方案)», 「중앙 국유기업 노동인력 및 수입 분배제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深化中央企业劳动用工和收入分配制度改革指导意见)」 등의 의견수렴안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수정 중에 있음.

■ 국유기업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책 조정은 국유기업의 고위간부들이 높은 급여를 받으며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 상장기업 기준, 중앙 국유기업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3명 간부들의 평균 급여는 73만 위안으로, 지방 국유기업 및 민간기업의 평균 60만 위안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중앙 국유기업의 규모 및 수익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경공업, 전통미디어, 전자 등 일부 업계에 종사하는 중앙 국유기업의 간부 급여비율이 민간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중국 금융통계정보 플랫폼인 ‘Wind’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유기업 간부의 평균 급여 수준은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민간기업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고급여 저실적’의 양상을 보이는 중앙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간부들의 급여 최고액 책정을 준비 중이며, 간부들이 실적대비 높은 급여를 받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국유기업의 주요 간부들 급여 상한가를 기타 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60만 위안으로 책정할 계획임.

■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해 기업 특성에 따른 분류와 감독관리 및 체제개혁 시행 등의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향후 간부 관리체제 개혁과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이사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혼합소유제 발전을 통해 국유자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는 국유자본·집단지본·비(非)공유자본 등의 상호 융합으로 국유자본의 기능 확대와 부가가치의 증대, 각종 자본 소유제의 상호보완 및 촉진 등이 예상됨.

- 또한 국유자산 관리체제의 개선은 국유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경제구조 조정능력 제고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이 사업 분야를 확장할 때 수익물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몇 개의 국유자본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정부는 기업경영에서 투자자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시장화 및 민영화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기업제도의 개선으로 제도 보완을 통한 경영 및 정책 결정의 규범화, 기업의 부가가치 증대, 공정한 경쟁,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 제도보완은 재산권과 권리 및 책임 범위의 확정,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설정할 것으로 보임.
- 합리적인 급여제도와 복리체제를 도입하고, 실적에 따라 직무대우 수준을 조정하여 전체 직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업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됨.

라. 의법치국(依法治國)

- <영도소조> ‘8차 회의’와 ‘9차 회의’에 걸쳐 의법치국에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 ‘법치중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여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 ‘8차 회의’에서 『4중 전회 <결정> 시행을 위한 2015년 업무(贯彻是适当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重要举措2015年工作要点)』와 ‘9차 회의’에서 『4중 전회 <결정> 시행을 위한 사법체제 및 사회제도 개혁의 시행방안(关于贯彻落实党的十八届四中全会决定进一步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实施方案)』이 심의통과 됨.
- ‘4중 전회’에서 심의통과시킨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의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은 전면적인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5대 체계와 6대 임무를 제시하고 있음.

표 3. 의법치국 총 목표

구분	목표
5개 체계	완비된 법률규범체계
	고효율의 법치시행체계
	엄격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
	완전한 당 내 법규체계
6대 임무	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 완비, 헌법 시행 강화
	의법행정 추진 심화, 법치정부 건설 가속화
	사법 공정성 보장, 사법 공신력 제고
	국민의 법치의식 강화, 법치사회 건설 추진
	법치공작대오 건설
공산당 주도의 의법치국 건설	

자료: 『依法治国阔步向前』, 『经济日报』 재정리. (2015년1월20일)

- 중국경제는 현재 ‘뉴노멀(新常态)’에 진입했고, 외연적 발전단계에서 과학적 발전단계로의 전환 중이며, 법치를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 각 간부들은 여전히 비(非)법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므로, 법치사상 및 법치방식 강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함.
- 법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 과학적으로 직능을 구분하고,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법 집행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는 등 법치정부의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의법치국은 사회 상층부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의 준법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법의 권위는 국민의 법 수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법치교육을 국민교육체계 및 정신문명 건설 내용에 포함시키고, 사회경영에서 각 사회주체의 적극적 역할과 발휘를 지지, 건전한 사회모순 경보 메커니즘, 이익욕구 표현 메커니즘, 협상 및 소통 메커니즘, 구제 및 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대중 이익 조율과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 채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마. 재정·세제 개혁¹²⁾

- <영도소조> ‘3차 회의’에서 「재정·세제 체제 개혁 심화의 총체적 방안(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案)」을 심의, 예산관리·세제·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중앙과 지방의 수입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급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출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재정세제 개혁은 중국경제의 구조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가 통치체제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개혁임.
- 재정분야 개혁은 △ 예산관리 제도의 현대화 △ 지방채무 관리 △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장환경 조성의 4대 주요 목표를 제시, △ 투명한 예산제도 수립 △ 정부의 예산시스템 개선 △ 연간 예산심사 방식의 개선 △ 예산집행관리 강화 △ 지방정부의 재무관리 규범화 △ 이 전지급제도의 정리와 규범화 △ 세수우대에 대한 정책규범 정리의 7대 개혁안의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임.
- 세제분야 개혁은 △ 세제분야 개혁을 위한 부분적 감세 실현 △ 다목적 소비 억제 △ 자원낭비 및 환경과피 억제 △ 지방 세수 증대의 4대 주요 목표를 제시, △영 업세 개혁 △ 소비세 제도 개선 △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중국 재정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방향」,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8 참고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원세 개혁 가속화 △ 환경보호세 제도 확립 △ 부동산세 입법 추진 △ 개인소득세제 전환 추진의 6대 개혁안의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임.

- 현재 재정분야 개혁의 당위성과 노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평가됨.
- 투명한 예산제도 수립으로 향후 정부의 예·결산 항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자금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4대 예산(공공예산, 정부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 사회보장예산)의 수지 범위와 기능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역량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수지와 GDP에 관련된 중요 7가지 영역(교육, 과학기술, 농업, 문화, 의료, 사회보험, 양육)에 대한 처리규정을 연구·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간의 경제적인 세수우대 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장환경 조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 향후 지방의 세수우대 정책을 2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됨.
 - 공무원 비준을 얻는 등 이미 제정된 지역성 세수우대 정책 중 시한이 있는 것은 시한이 되면 폐지하고, 시한이 없는 것은 제정, 아직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취소시킴.
 - 중앙정부에서 일원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현재 세제 분야의 주요 문제점은 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증치세율이 높고 개인소득세 설계가 불합리하다는 점 등으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감세를 시행하면 기업과 가정에 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증치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소득세의 조절 기능 및 부동산세 과세징수 표준을 지정하는 등 세수징수관리법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됨.

바. 사법제도 개혁

- <영도소조> ‘2차 회의’, ‘3차 회의’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 향후 행정권한과 사법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나눌 예정임.
- ‘2차 회의’에서 「사법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의 의견 및 업무시행 분담에 관한 방안(关于深化司法体制和社会体制改革的意见及贯彻实施分工方案)」과 ‘3차 회의’에서 「사법체제 개혁 시범실시에 관한 문제와 의견(关于司法体制改革试点若干问题的框架意见)」 및 「상하이시 사법개혁 시범실시 업무 방안(上

海市司法改革试点工作方案」이 심의통과 됨.

- '2차 회의'와 '3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의견을 통해 향후 법이 정한 직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법 종사자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할 예정임.

■ 중국정부는 향후 사법제도 완비, 사법권한 구조의 최적화 등 사법제도의 구조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임.

-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권 및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고, 간부가 사법 활동에 간여하거나 안건 처리에 개입할 경우 이를 기록하고 통보하며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 사법권한 구조의 최적화와 재판권 및 집행권을 분리하는 체제개혁 시범을 시행하며, 최고 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 행정구역을 초월한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 설립을 모색할 계획임.

■ 사법제도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행정구역을 초월한 사법기구의 설립은 경찰권, 검찰권 및 재판권 간의 균형을 이루고 지방정부의 사법개입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그동안 검찰기관의 공익소송 제기제도는 단체이익과 관계된 사안이 적당한 소송주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검찰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법이 다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검찰기관 또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어 하류오염 같은 경우 어느 누가 서민을 대표해 소송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개인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만한 능력이 없고, 특히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얽혀 있어 사안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소할 경우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영도소조> '11차 회의'에서 「국민심판원제도 개혁 시범실시 방안(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方案)」과 「인민법원 등기제도 개혁 입안추진에 관한 의견(关于人民法院推行立案登记制改革的意见)」을 심의, 이후 국민배심원제도와 인민법원의 입안등록제에 대한 개혁이 실시될 예정임.

- 국민배심원제도의 주된 개혁내용은 국민배심원의 선임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며, 국민배심원은 법률 적용문제를 심사하지 않고 사실인정에 대한 심사관리에만 참여하는 것임.
- 국민배심원 나이를 만23세에서 만28세로 변경하고, 학력에 대한 요구를 원래의 전문대 이상에서 고등학교 이상으로 변경함.
- 대중이익, 사회공공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이 관심 갖는 사건의 경우 제1심 형사, 민사, 행정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민배심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10년 이상 유기형,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제1심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배심제도를 실시하며, 제1심 형사사건의 피고인, 민사사건 당사자, 행정사건 원고가 국민배심원이 합의 법정에서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국민배심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 재판장은 국민배심원이 사건인정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하지만, 사건 사실에 대한 국민배심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인민법원의 입안등록제 개혁의 주된 개혁내용은 입안심사제에서 입안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임.
- 법적 규정에 부합되는 고소, 자소, 신청에 대해 모두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등록·입안함.
-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판정하지 못할 경우 우선 입안해야 하며, 법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거나 입안하지 않도록 판결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내부 감독관리와 인민대회 감독관리, 검찰감독과 사회감독 등 외부감독 강화를 명확히 제시함.
- 법안을 입안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임.

사. 싱크탱크 개혁

- <영도소조> ‘6차 회의’에서 심의된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 강화에 관한 의견 ‘关于加强中国特色新型智库建设的意见’>으로 중국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정부 주도로 50개 이상의 싱크탱크를 설립할 예정임.
-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실정에 맞춰 다양한 정책연구 및 자문에 필요한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것으로,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고급 싱크탱크 50~100개 설립을 추진함.
- 현재 중국의 싱크탱크는 약 2,500개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전임연구원이 35,000명에 달하고 직원이 27만 명에 이르는 규모로, 이 중 정책연구를 핵심으로 하고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크탱크형 연구기관은 2,000개에 달함.
- 대표적인 중국의 10대 싱크탱크로는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국무원발전연구중심(国务院发展研究中心),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중국군사과학원(中国军事科学院), 중국국제문제연구소(中国国际问题研究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 중국태평양경제합작전국위원회(中国太平洋经济合作全国委员会), 중국과학기술협회(中国科学技术委员会), 중국국제전략학회(中国国际战略学会),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上海国际问题研究所)임.
- 이들은 모두 정부부처 산하의 사업 단위형 연구기관으로, 중국 싱크탱크의 정책영향력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국책 싱크탱크들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은 국가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당·정 기관과 각급 사회과학원, 대학, 당교(党校), 군대, 기업, 연구소, 민간연구기관 등의 고급인재로 구성될 전망이다.
- 새로 설립되는 싱크탱크는 정부와 사회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정책자문 및 여론선도와 공공외교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영향력이 크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갖춘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을 과감하게 당·정 기관에 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로 인력교류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 새로 설립되는 싱크탱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급 정부가 공개입찰을 통해 수시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 시에는 공청회, 좌담회, 심의회 등을 열어 싱크탱크의 의견제시와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아. 축구개혁

■ <영도소조> '10차 회의'에서 「중국 축구개혁의 총체적 방안(中国足球改革总体方案)」을 심의, 이후 중국의 경기력 상승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구협회의 독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그동안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과 선수 선발, 리그 운영 등에 관한 사안은 국가체육총국과 축구협회가 공동으로 결정해왔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은 정치력이 강한 국가체육총국이 주도해오면서 실력 없는 선수나 코치 및 스태프 등 관련 인원이 중용되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 축구 승부조작, 심판 매수, 편파판정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축구협회를 국가체육총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저명한 축구전문가, 사회인사 등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축구발전을 위해 제시된 개혁안은 다음과 같음.

- 개혁안은 △ 축구관리체계 개선 △ 중국 특색의 축구관리발전, 중기과제로 △ 청소년 축구 인구 확대 △ 아시아 일류 수준의 프로축구팀 육성 △ 남자 축구대표팀의 아시아 선두 수준 실력 확보 △ 여자 축구대표팀 집중 육성, 장기과제로 △ 월드컵 개최 △ 남자 축구대표팀 세계 대열 진입 등임.
- 또한 국가대표팀 수준 향상을 위해 경비 지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고 훈련장 건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프로 리그 이사회'를 신설해 공정한 심판제도와 선수, 감독의 규정 준수 메커니즘을 만들 예정임.
- 장기적으로 청소년 축구발전을 위해서 초·중 학교 체육과목에 축구를 포함하고, 2020년까지 축구특색학교를 2만 개, 2025년까지 5만 개로 늘릴 계획임.

자. 혁신개혁 시범구

■ <영도소조> '12차 회의'에서 「혁신개혁 시범구 전면적 추진에 관한 총체적 방안(关于在部分区域系统推进全面改革创新试验的总体方案)」을 심의·통과, 혁신개혁 시범구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창업과 혁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개혁 시범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현재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지역에서 ‘혁신개혁 시범구’로 지정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 임.
- 베이징(北京)은 2015년 2월 과학기술공작회의(科学技术工作会议)를 개최하여 ‘혁신개혁 시범구’ 건설을 논의한 뒤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준비 중이며, 상하이(上海)도 글로벌 과학혁신센터 건설을 2015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2/4분기에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 또한 후난(湖南)성도 창사(长沙)와 주저우(株洲), 상탄(湘潭)을 잇는 ‘창주탄(长株潭)’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개혁 시범구’로 지정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

■ ‘혁신개혁 시범구’는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경영, 브랜드, 조직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해 노동·정보·지식·기술·경영·자본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혁신개혁 시범구’도 자유무역구처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개혁 시범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0년까지 과학기술개혁 방면에서 성과를 내는 것임.

3. 2015년 경제개혁 중점

■ 2015년에는 법치행정, 권한이양, 기업·금융·가격개혁 등 8대 경제개혁을 실시할 것임.

- 법치행정개혁을 통해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 청취 및 리스크 평가가 강화될 것이며, 행정집행에 대한 감독 관리가 강화될 것임.
- 기업개혁에는 △ 국유기업 기능 심화 분류 △ 국유자산 관리시스템 개선 △ 급여제도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 △ 4항 개혁안 추진 가속화 △ 행정 및 기업간 분리 △ 현대기업제도 개선 △ 혼합소유제 경제발전 규범화 등이 제시됨.
- 혼합소유제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가 지속될 것이며, 사회보장기금 및 보험기금 등 공공기금에 대해 중국 내 투자자에게 우선순위 제공하고, ‘하나의 기업, 하나의 정책(一企一策)’ 시행될 것임.
- 금융개혁에는 △ 자본시장 및 금융 개혁 심화 △ 중소 금융기관의 농촌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민간은행 설립 적극 추진 △ 예금보험 제도 수립 등이 제시됨.
- 가격개혁은 가격 상하한 혹은 정찰제를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 가격통제가 철폐 또는 완화되는 대상은 담배, 철도 운송 및 화물 가격, 우편료, 여객 항공료, 전문서비스 수수료 등임. **KIEP**

표 4. 2015년 8대 경제개혁 중점

중점업무	구체 내용	
경제구조 개혁	법치행정	- 개발, 투자 및 토지 관리 등과 관련한 법·규정 정비 -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 청취, 리스크 평가 강화 - 행정집행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정부 심사 및 승인 절차 개선	- 정부심사 권한을 하위급 정부에 이양하거나 폐지 - 시장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 절차 개선 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협력 강화
	기업개혁	-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실행 - 국유기업 내 혼합소유제 실현 및 비국유자본의 국유기업 투자지분 보유 및 인프라 투자 장려
	재정세계 개혁	- 중앙 및 지방 부처의 예산결산 공개 및 이전지출 개혁 - 세금우대 정책 및 자원·환경 보호세 도입
	금융서비스 개선	- 자본시장 및 금융 개혁 심화 - 중소 금융기관의 농촌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민간은행 설립 적극 추진
	투·융자 체제개혁	- 투자 프로젝트 심사 및 승인 시스템 개혁 적극 추진 - 투자 심사, 승인,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투·융자 체제 개혁을 위한 세부 규정 개선
	가격개혁 심화	- 약품, 철도, 화물, 우편 등 가격 통제 철폐
	농촌 및 토지제도 개혁	- 농촌 토지 징수 관련 시범적 개혁 실시 - 농촌 집체 경영 건설용 토지 시장화 - 농촌 토지 사용권을 사용한 대출담보 허용 시범적 실시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3. 13), 「2015년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 운용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재인용; 「2015년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재정리.

<참고자료>

- 「10次会议45份文件勾勒改革全景地方、企业深改进行时」. 『21世纪经济报道』. (2015年3月9日)
- 「8次会议谋篇布局深化改革次第开花」. 『经济时报』. (2015年1月3日)
- 「习近平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八次会议强调」. 『经济时报』. (2014年12月31日)
- 「中央经济工作会议：政策力度或更大」. 『第一财经日报』. (2014年12月5日)
- 「2014年深改成绩单：完成金200项任务」. 『第一财经日报』. (2014年12月31日)
- 「从深改组会议读懂改革时间表」. 『第一财经日报』. (2014年11月25日)
- 「社会体制改革意在民生」. 『经济日报』. (2015年1月25日)
- 「民生改革落地开花」. 『经济日报』. (2015年1月29日)
- 「经济改革策马扬鞭」. 『人民日报』. (2015年1月5日)

중국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 현황 및 2015년 주요 개혁방향: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 「全面深化改革一年来」. 『人民日报』. (2015年1月9日)
- 「“全面改革”处理好四大关系」. 『中国(海南)改革发展研究院』. (2015年1月12日)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2015年将推进60项改革举措」. 『人民网』. (2015年3月7日)
- 「智库解读：2015年16个改革重点」. 『中国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 (2015年3月6日)
-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资管理制度变革问题与突破」. 『国际贸易』. (2014年 第8期)
- 「习近平主持召开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十一次会议」. 『人民网』. (2015年4月1日)
- 「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第十二次会议召开」. 『新华社』. (2015年5月5日)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한동균(handongjun@hotmail.co.kr)